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제출년월일 : 2015. 9. 23.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가.「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기타 부서 명칭 등 조문 정비(안 제9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택법」제43조의3

2)「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추가 편성 불필요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2015.8.12. ~ 2015.9.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1. 주택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과장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문화체육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3명 이내 3. (생 략) ④ ~ ⑤ (생 략)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사항 없음

4. 작성자

○ 주택과 건축7급 박재웅(330-1571)

관 계 법 령

□ 주택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2호, 2014.1.9., 일부개정]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5.22)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